

2001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제출 자료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인권감시기구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의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노동자 감시 반대, 대용 CCTV 철거 전북공동대책의  
대용노동조합**



2001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제출 자료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인권감시기구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1. (주)대용(이하 대용)에 관하여	1
2. 인권감시기구 설치의 배경	2
3. 인권감시기구 설치의 목적	3
4. 인권감시기구 설치의 현황	4
5. 인권감시기구 설치의 문제점	5
6. 인권감시기구 설치의 개선방안	6
7. 인권감시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	7
8. 인권감시기구 설치의 사회적 영향	8
9. 인권감시기구 설치의 경제적 영향	9
10. 인권감시기구 설치의 문화적 영향	10
11. 인권감시기구 설치의 정치적 영향	11
12. 인권감시기구 설치의 외교적 영향	12
13. 인권감시기구 설치의 국제적 영향	13
14. 인권감시기구 설치의 결론	14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노동자 감시 반대, 대용 CCTV 철거 전북공동대책위**  
**대용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주)대용노동공공

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 목차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철거해야 합니다.

- I. 익산 (주)대용 노동현장에 설치된 CCTV가 철거되어야 할 6가지 근거 ..... 5
- II. 노동자감시 반대, 대용 CCTV철거를 위한 전북공대위 의견서 ..... 8
- III. 노동조합 의견서 ..... 10
- IV. 첨부자료 1 대용cctv관련 경과 ..... 15
  - 첨부자료 2. 조합원 진술서 ..... 16
  - 첨부자료 3. 임중완 조장 양심선언서 ..... 59
  - 첨부자료 4. 대용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2001조정26)에 대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63
  - 첨부자료 5. ILO '노동자권리규약' ..... 68
  - 첨부자료 6.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에 대한 헌법 조항 및 노동자 감시 관련 대법원 판례 ..... 69
  - 첨부자료 7. 전국 정보관련 단체 공동성명서 ..... 70
  - 첨부자료 8. '국가인권위원회바로세우자'인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 72
  - 첨부자료 9. 사측 공문(총무X-01-0806-01) ..... 74
  - 첨부자료 10. 민주노동전북본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물  
(<http://chonbuk.nodong.net> 826번 게시물) ..... 75
  - 첨부자료 11. 사측 공문(총무X-01-0828-01) ..... 80
  - 첨부자료 12. 조원 서명 ..... 81
  - 첨부자료 13. 9월 11일 농성장 강제철거 사진 자료 ..... 83

참고자료집 : 노동감시 근절과 대용CCTV철거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 노동현장에서의 CCTV 설치와 노동자의 인권
- ▲ 대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쟁점과 이에 관련한 문제
- ▲ 노동자감시 사례



# 차 례

1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I

8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II

10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III

15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VI

16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VII

20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VIII

23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IX

24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X

25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XI

26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XII

27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XIII

28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XIV

29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XV

30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XVI

31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XVII

32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XVIII

33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XIX

34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XX

35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XXI

36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XXII

37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XXIII

38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XXIV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발행처: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

발행처: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

발행처: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인권감시기구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본서 발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발간위원회

###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전화.741-5363. 전송.741-5364.

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사회연대/ 기지촌여성아이들의쉼터 '새울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장애인아학/ 다산인권센터/ 대자보/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화물위헌전국고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의료연합/ 부산인권센터/ 사회진보물위헌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외국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군북력희생자가족협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인권지기/ 인권과교육개혁을위한전국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평등노조이주지부/ 평화인권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익산 (주)대용 노동현장에 설치된

### CCTV가 철거되어야 할 6가지 근거

#### 1) 7월 22일 작업장 내에 CCTV가 설치된 후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병적 증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첨부자료2. 조합원 진술서)

- CCTV가 설치된 후 7월 27일 고민자씨 등 60여명의 노동자가 스트레스와 두통, 근육통 등의 증세를 호소함.
- 8월 7일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던 김명진씨, 익산 소재 정신과 의원에서 '망상적 급성 정신병적 장애 추정' 진단 받음.
- 조정규씨, 조합 주최로 8월 8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마치 내가 짐승이 된 기분이다. 교도소에서도 주위 외벽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어도 모든 행동을 감시 받지 않는 것이다. 과연 내가 짐승인가.'라고 진술.
- 8월 10일 CCTV가 있는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며 퇴사한 송호경씨는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꿈에까지 나타났다"고 함. 이외에도 송호경씨는 CCTV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함.

#### 2) (주)대용은 노동자 사이에 이간질을 일삼아 상호감시하게 하며 인간의 양심마저 짓누르고 있습니다.

##### (첨부자료 3. 임중완씨 양심선언 당시 진술서)

- 7월 30일 회사측의 지속적인 조합원 동태보고 강압을 받던 D/C 1조장 임중완씨가 인간적 배신감과 양심의 자책감을 느끼고 퇴사. 퇴사 이전까지 임중완씨는 감시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질타와 징계하겠다는 협박과, 동시에 동료들 감시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다가 스트레스성 위장장애와 두통을 얻음.
- 임중완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00년 임금인상 단체교섭이 타결된 후 D/C(다이캐스팅, 알루미늄 용액을 이용한 제품 모형을 만드는 과정) 팀장 박경현씨가 조합원들의 모든 행동을 보고서로 매일 작성해 제출하라고 각 조장에게 강제함.

- 공장장 김태일은 라이터 크기의 디지털 녹음기를 이용해 조합원의 말을 녹음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문닫게 하겠다고 발언함.
- 이번 CCTV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용한 디지털 녹음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명백한 '노동자 감시 기구'임.
- CCTV는 노동자간 경쟁을 부추겨 일터를 토대로 한 공동체를 해체할 우려가 있음.
- 8월 2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본건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주문으로 결정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음날인 28일 합법적 파업을 했음에도 회사측은 '불법파업'이라고 선전하면서 노동조합을 불법집단이라고 매도함. (첨부자료 4. 대용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2001조정26)에 대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3) (주)대용의 CCTV설치는 ILO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든 국제지침에도 어긋납니다.(첨부자료 5.)

- 대용의 노동자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보가 누수돼 어떻게 활용되는지, 얼마나 누수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는 지난 96년 10월 7일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에는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 본인에게 사전에 언급하지는커녕 노조의 '설치목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비밀 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된다.'는 항목에도 불구하고 CCTV설치 사실을 밝히지 않아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이같은 행위는 ILO의 노동자권리규약이 구속력이 없음을 조롱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 4) 대체근로를 투입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큼니다.



- 상용직과 일용직 등 대체근로를 투입해 전문적인 과정을 요구하는 작업 도중에 습득 기술의 미숙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우려됩니다.
- 한정된 노동자가 계속 산업과 특근을 하면서 기계를 돌리게 돼 과로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큼니다.

**5) CCTV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침해하는 감시 기구입니다.**

(첨부자료 6. 헌법 제 10조 전문 및 대법원 판례)

-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같은 불가침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대용은 CCTV를 설치해 이런 권리를 봉쇄하고 있으며 행정당국-국가-의 CCTV철거명령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 (주)대용이 작업장 안에 설치한 시시티브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장 제10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제2장 제17조」를 어긴 것이며 이 두 조항은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 규범에 해당합니다.

**6) 지금 현장에서 인간의 권리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파업-를 벌이고 있음에도 사측은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적으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고 시설물 등을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 외출하는 노동조합 간부의 차에 김태일 공장장이 갑자기 뛰어들어 살인미수를 주장한 적도 있으며 구사대들은 공장의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짓이기면서 노조원에 의한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오전 오후 면도삭발한 구사대 20명이 농성장 앞에서 위협적 태도로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일은 비밀비재하며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폭행하는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는 것을 제지하는 지역의 인권단체활동가에게도 욕설을 해댔습니다.

전북대책위 의견

**(주) 대용의 CCTV설치는 분명히 노동자 감시입니다.**

**1.전북대책위 결성까지**

전북지역은 최근 군산개정병원, 익산고하캠, 군산축협, 전주동아자동차등 노동조합의 생존권요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현장의 상황에서 (주) 대용의 CCTV는 공장안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지난 8월13일 사측과의 면담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의 거부로 전북지역의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8월23일 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2. 대용사측의 ‘설비보호, 도난방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주) 대용은 설비보호, 도난방지라는 이유로 CCTV설치를 주장하지만 정작 고가물품인 알루미늄원료창고와 제품 출하창고 등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재의 CCTV가 설비보호, 도난방지라는 목적보다는 노동자감시에 그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특히 외부의 침입이나 유사한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일체의 협의 없이 진행된 CCTV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현장의 노동자가 설비파손행위를 자행한 적이 없음에도 사측이 설치를 강행한 것은 노동자를 예비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 CCTV설치이전의 상황과 이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북대책위의 8월13일 사측 면담결과 사측의 CCTV설치목적이 도난방지, 시설보



호를 그 이유로 하고 있고 비조합원의 위협이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마찰은 CCTV설치 이후의 상황입니다. 설령 설치이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CCTV설치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장 작업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대책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의 노동자 상호간의 갈등양상이 CCTV설치에서 비롯된 만큼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고 노사가 합의되면 당연히 해소되는 문제입니다.

#### 4. 사측이 CCTV를 철거하면 원만한 합의가 보입니다.

작년 노동조합 결성 이후 사측은 계속해서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 끝에 CCTV설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CCTV는 효율성보다는 직접적 인권문제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설비보호는 생산의 각 주체의 상호 노력을 약속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 노동자감시 반대, 대응 CCTV철거를 위한 전북공동대책위

(공동대표 문규현, 염경석)

전북전주시 우아동 금남빌딩 3층 ☎ 244-8147 Fax-244-8148 <http://watch.inp.or.kr>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시민운동연합,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민주노총전북본부, 금속연맹전북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통신연대INP, 노동자의집,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 저희의 희망은 감시없는 작업장 즐거운 노동입니다

7월 22일(CCTV 카메라 설치 일) 전후 상황과

사측의 주장(사측의 9월7일 보도자료발표)에 대한 의견

#### 1. 7월 22일 이전의 대응노동조합 상황

- 전 직원 121명 : 생산직 94명 중 조합원 88명, 비조합원 6명(여호와 증인 등), 사무직 27명
- 조합 대상자 중 조합원 비율 : 93.6%

#### 2. 7월 22일 이전의 노동조건

- 임금 평균 75만원(기본급, 각종 수당 포함), 잔업, 특근 등 12시간 맞교대 생활
- 통상임금 미적용 - 초과근로 수당 등에서 기본급만 적용
- 강제잔업, 특근을 강요받고 거부하면 "회사에 놀러왔냐?", "집에가서 쉬어라"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받아 옴.
- 산업재해를 당한 이명훈 사원에게 당시 현장이 보이는 곳에서 김상무, 하청 사장들과 술을 먹고 있던 현 공장장이 사고가 나자 "병신같은게 다쳤다"며 면박을 주는 사건이 있었음. 이 사고의 원인은 기계이상시 기계를 멈추고 수리해야 하는데 기계를 멈출 경우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며 기계를 돌리면서 하라는 전종채 조장(2001년 7월 31일 반장 승진)의 지시로 발생한 사고임.



### 3. 7월 22일 이전의 노/사의 상태

- 2000년 10월 2일 단체협약 체결 이후 공장장 지시로 팀장이 ("보고서 내용으로 징계 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하겠다"며-임중완 조장 진술서 중) 현장 조장들에게 일일동태 보고서 작성과 고성능 디지털 녹음기 감청 지시 (첨부자료 3)
- 동태보고서를 토대로 2000년 12월 9일 12명 징계(9명 해고, 2명 감봉, 1명 시말서)
- 2001년 7월 5일 조장의 라인이탈을 금하고 있는 노사공정실사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라인을 이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문체부장 박태수의 기계가 이상이 생겼는데도 몇 시간 동안 조장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고 화가난 문화체육부장이 늦게야 나타난 전종채 조장과 다툼.

### 4. 7월 22일 이후 사측의 CCTV 관련 입장

- 7월 23일 CCTV 발견 후 노동조합이 수차례 질의한 설치이유에 대해 사측은 8월 6일 에야 시설보호 사항이라며 통보.(첨부자료 9)
- 8월 13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에 CCTV 설치 이유에 대한 공장장 면담에서 공장장이 "기계 파손 방지, 도난방지"를 이유로 설치했다고 말함. 이때 "CCTV 카메라 설치 이전에 기계 파손이나 도난이 있었냐"는 질문에 공장장이 "한번도 없었다"고 답함.
- 8월 27일 노동부 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관, 대표이사, 노조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CCTV를 왜 설치했느냐고 묻자 대표이사는 "내가 그럴 사람입니까? 공장장이 CCTV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공장장이 '노조간부 2명을 해고하면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할 것이고 기계도 파손될 소지가 있다'고 계속 주장해서, '너한테 경영권을 위임했으니까 공장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도 철거(CCTV를) 철거하라고 지시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함.
- 9월 7일 집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의 폭력성을 거론하며 폭력적인 노동조합에서 비조합원들의 보호를 거론함.

### 5. 사측이 폭력 사례로 들고 있는 사건들(첨부자료 10)

#### 5-1. 조장이 징계위원회에 증언했다는 이유로 사람의 이름에 쇄코깅이로 찍어 대는 저주행위와 주술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 2000년 12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조장들이 매일 자신들의 동태를 분단위로 보고서로 보고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한 마음 억누를 수 없어서 자기 기계에 옆에서 한 일임. 이 보고서를 통해 12명이 징계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분노한 1명의 노동자가 "조합원이 조합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분노한 상태에서 행해진 일임.
- 당시 이름이 적혔던 조장 2명은 조합원이었음.

#### 5-2. 7월 5일 조장에게 쇄파이프와 핸드 그라인더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 2001년 1월에 공정실사 후 노사가 맺은 노사공정실사에는 작업자 임무, 조장의 임무, 부서팀장의 임무를 합의했음.
- 「노사공정실사 합의서」에는 조장은 회사 회의를 제외하고는 라인 이탈을 금하고 있는데 수시로 조장이 라인을 이탈하고 다툼이 있었던 7월 5일에도 기계에 이상이 생겼고, 기계 이상을 봐야할 조장이 없어서 몇시간 동안 혼자 마음을 졸이다가 화가난 노동조합 문화체육부장 박태수가 전종채 조장이 현장에 나타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애!!"라고 부르자 "내가 애냐"며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선풍기를 차면서 싸움이 남. 싸움을 말리는 유철수 대의원에게 "너는 빠져"라며 가슴을 밀어내자 문화체육부장이 볼트를 조이는 일명 "깡깡이"를 들었다가 땅에 버리는 일이 있었음.
- 회사는 싸움의 원인이나 경과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문화체육부장과 싸움을 말리던 대의원까지 해고함.
- 평소 문화체육부장이 속해 있는 조에서 조원들이 조장보다 문화체육부장에게 기계이상을 더 말하고 수리를 받아 오고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며 진정함.(첨부자료 12)

#### 5-3.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욕설을 하고 조장, 회사의 지시이든 무조건 거부하기가 비일비재했다는 주장에 대해

- 7월 22일 전에는 조합가입 대상자 중 93.6%가 조합원이었고, 6명만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음. 조합 미가입자를 따돌리거나 욕설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음.



- 조합과 협의했느냐고 물으며 지시를 거부한 것은 몰렉스라인에서 기계 1대당 2명이 작업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사항에 대해 사측이 1명을 빼는 등 합의사항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어기는 사건들에 대한 거부임.

#### 5-4. CCTV 카메라 설치 후 기계고장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 기계의 고장은 기계 자체의 고장이 아니라, 제품 주조 시 이물질에 의한 금형 내에서의 문제나 틀 안의 편이 끊어지거나 하는 제품과 관련된 문제들임.
- 이것은 7월 22일 CCTV 카메라 설치 후 굴욕감, 불신 받는 느낌, 감시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이 잔업을 거부하면서 실제 기계 작동이 줄어든 것으로 보임.
- 기계 고장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제품의 불량률은 늘어난 것으로 보임.

#### 6.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

- 8월 27일 전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내린 조정종료 결정으로 적법하게 쟁의행위에 들어간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말도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에 들어갔으므로 불법파업이라고 호도함.(첨부자료 11)
- 단체협약과 노동쟁의 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금지 조항을 어기고 담을 넘어 일용직을 투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중에도 회사 식당, 출퇴근 차량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측은 식당을 폐쇄시킴.
- 9월 11일 조합원들이 안산 대용산업 앞 집회에 간 틈을 타 노동조합이 농성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천막을 폭력적으로 강제철거하고 식사를 위해 마련한 냉장고 등 집기를 부수고, 음식물을 회사 주차장에 모두 널어놓는 폭력사태 발생.(첨부자료 13)

#### 7. 종합 의견

- 사측은 CCTV카메라 설치의 정당성을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을 협박하고 폭언, 폭력을 일삼는 노동조합의 폭력성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7월 22일 CCTV카메라 설치 전에 조합 가입대상 중 종교적 신념 등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잘못된 것임.

- CCTV카메라 설치 이후 7월 31일부터 관리자들과 일부 조합원이 모여 만든 상조회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것이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노동자들의 탈퇴 이유도 대학 다니는 자녀 문제, 입사추천자들의 압력, 생계문제 등이 그 이유로서 CCTV설치 이전부터 있었던 노동조합의 폭력성으로 인한 것이 아님.
-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파업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파업투쟁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조합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 파업 초반 파업에 참가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이 같이 술도 먹고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비조합원을 설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함.
- 파업에 참가한 여성조합원 집에 비조합원이 찾아와 욕설을 하고 그로 인해 남편과 불화가 생기는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 비조합원과의 입싸움이 생긴 것임.
- 사측은 현재 CCTV를 이용한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노/노 갈등 유발, 감정싸움으로 현재를 몰아가고 있음.

#### 8. 현 사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1년 밖에 되지 않은 현재까지 사측은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징계, 해고, 동태보고, 단협위반, CCTV를 이용한 감시까지 동원하여 탄압해 왔음.
- 사측의 주장대로 기계의 파괴와 도난이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라면 이것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협력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함.
- 감시와 통제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철거하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대 용 노 동 조 합

(위원장 박성준, 전북 익산시 팔봉동 839, Tel: 835-9515 Fax: 835-9514)



## 대용 CCTV 관련 경과

- 7월 22일 일방적 CCTV설치.
- 7월 25일 산재사고 발생.
- 7월 30일 대용노조, 조합원 대상 CCTV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 설문조사 진행.
- 7월 31일 노동자감시 강요로 과중한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치료를 받았던 임중완 조장 퇴사.
- 8월 7일 대용 김명진씨 '급성 정신병적 장애'로 추정, '2주간의 신경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요망된다'는 진단 받음.
- 8월 9일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금속연맹전북본부, 대용노조 3자 주최 기자회견.  
대용노조, 회사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 8월 10일 대용 송호경씨 감시카메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굴욕감에 시달린다며 진술서를 작성한 직후 사직서 제출.
- 8월 13일 전북민중연대회의(대표 문규현) 주최 '노동감시·CCTV설치 대용 규탄대회'  
박훈 변호사 대용 방문조사.
- 8월 17일 6차례에 걸친 보충협약 요구를 사측이 거절하자 쟁의조정신청.
- 8월 18일 대용노조창립1주년 기념/ 감시없는일터·즐거운 노동 시민한마당 행사(익산 영등동 아파트단지)
- 8월 23일 대용노조,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금속연맹전북본부,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통신연대INP,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전북민중연대회의 등 총 16개 단체가 참가해 대책위 출범기자회견 갖고 (주)대용앞 규탄대회 개최.
- 8월 24일 대용노조 쟁의행위찬반투표(찬성 88%).
- 8월 27일 지방노동위원회 심판 조정종료. /전북대책위 주최 선전전(전주 외환은행 앞).
- 8월 28일 대용노조 파업 돌입.
- 9월 1일 익산노동사무소 항의 연대집회(대용노조·전북대책위 공동).
- 9월 4일 9번째 보충협약 요구(CCTV철거, 공장이전 반대).
- 9월 6일 직장폐쇄신고.
- 9월 7일 현장으로 들어가는 남성·여성노동자 2인 폭행, 각각 전치 10일과 전치 2주 진단.
- 9월 11일 사측, 구사대 동원해 폭력을 남발하며 후문과 정문 천막 기습 철거, 기물 파손 이 과정에서 구사대에 의해 1명이 상해를 입고 구급차로 실려감.  
안산 본사로 향하려던 항의집회 출발 차량을 저지하고 폭행 행사 1명 구급차로 실려감  
10번째 보충협약 요구(CCTV철거, 공장이전 반대), 답변 회피
- 9월 12일 '노동감시근절과 대용CCTV철거를 위한 토론회' 개최. (참가자 : 금속연맹법률원 소속 박 훈 변호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대표 강성호 목사), 전북시민운동연합(대표 전봉호 변호사) 대책위 참가 결의.
- 9월 13일 '노동부 직장행정 규탄 및 대용CCTV철거 촉구대회' 익산노동사무소 앞에서 개최.
- 9월 15일 쌀생산비 보장·개방농정 철폐 2001 전북농민대회 참가, 홍보전 진행.  
현재 19일째 파업.



첨부자료 2.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심리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두통을 호소하고 싶습니  
다 무슨 무리가 드뭅니까 인 것처럼 감시하고. 우리가 노트북  
하단 사랑인데 감시라이트 정말 너무라서  
일할 때마다 카메라의 신경이 흔들다가 작업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 임리가 ?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머리가 너무 바빠요.  
불량등 생산량의 저하가 된다

진술인 2 미자 서명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  
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작업에만 몰두해야 하는 압박감이 있고  
화장실에 가야해도 참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도 참게 됩니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진술인 오오승 서명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항상 누군가가 사방에서 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것 같아 어리가 터질 것 같다. 뒷머리가 땀뻑하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심신적 압박 때문에 가끔씩 가슴이 파르 먹히듯 들끓는 듯하다. 감시 카메라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씩 가슴에 미사 자국이 나고 아픈 곳의 상처들이 사라졌다. 한번은 꼭꼭 숨어서 나를 감시하여 잡으려도 끝까지 꾸짖었다.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특이 시련이었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일하는 줄 모르거나 반감이 있어서 일하면서 카메라로 인하여 신경쓰야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진술인 김기호 서명   
2001. 7. 21.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감시당하는 느낌에서 현상(현상) 이해는  
피곤감만 쌓입니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정말 못하겠어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는지.

진술인 현순례 서명   
2001. 7. 21.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게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야.  
이렇게 까지 하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나 싶고...  
근로자가 노예라는 생각이 들고.  
가정에 가서까지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건데  
너무 심하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반항심 때문에 작업효율이 떨어진다.  
감시하고 있다는 게 기분이 처지고  
일할 욕심이 나질 않는다.

진술인 김현정 서명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직장생활보다 회사에서 쉬는 시간이 ~~훨씬~~ <sup>그나마</sup> 시간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니 정신적으로  
위축이되고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어졌것 같다.  
계속적으로 감시속에 회사생활을 한다면  
돌아버릴것 같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연성희 작업은 ~~하루~~ 내가 무슨 죄인이 된것같은  
억압의 마음으로 작업이 임하게 된다.  
취항심. ~~뜻~~ <sup>뜻</sup>을 아서리 ~~하루~~ <sup>하루</sup> ~~하루~~ <sup>하루</sup> 더욱 기려진다.

진술인 김현정 서명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누군가한테 감시당하면서 근무를 해야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것지. 살기 싫다  
사랑인지라 때로는 ~~말~~말때는 놓았도 할수있지.  
그것도 눈치를 봐야하는지. 기지개도 한번씩 할수도  
있지만, 그것도 눈치를 보다니, 어느 하등하리  
이런것도 있는 사것고르려다.  
외엔 인간이 이렇게까지 해가면 어떻게  
살수있지. 인간적으로 할수없는것을 해고 싶은  
우리에 ~~살~~살에 타진 ~~우~~우를 어떻게 할까

2.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죄를지어서 감옥을가도 이런곳이 있는지  
~~살~~살을물랑안 채워주면되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양이 나쁜가 일다  
모르려 생산이 더하락것이야  
항상속이 속에 어떻게 양이 나쁘는가

진술인  
2001.

김이래 서명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우리는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서서 하는  
작업이라서 작업리듬이 일정치 않습니다.  
작업장에서 작업과 개개인이 아무 모르게 야근시간 감시를  
받으면서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육체적 리듬이 깨져있는 생산원장의 근무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압박이 크나큰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2.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현장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는 순간 우리 대용의  
사훈이 완전히 어긋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인위 차해가 분명합니다

진술인 가 소현 서명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회사 출근하여 회사에 투입되며 먼저 CCTV 카메라에 먼저 눈이 돌아가면서. 났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짜증나 스트레스를 받아 하루 일과가 불쾌감으로 싸여 지나간다.

확장성을 가려해도 카메라가 의식되고 몸 한모음 머으려 해도 카메라가 의식되서 이제는 어떡할 가려라도 카메라가 설치되었나 확인하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또한 스트레스상으로 집에서 아내에게 화를 많이내며 친구들과의 사이에도 점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목욕탕에 가서 물무게를 닦아 보았더니 물무게가 엉덩이나 감소되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늘었다 줄었다하는 편차가 1~2kg에 비하여 너무 감소되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기 때문이다. 주세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제품의 양품 사수는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도, 제품의 양품도 사수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동이 짝 막히 상해에서 아슬아슬하다 보니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본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가 못하여 사정이 가질 않는다. 그러므로 품질면과 제품수량이 CCTV 카메라 설치전보다 많이 줄었다.

진술인 노 여환 서명   
2001. 7. 30.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비이리 흉은 곳에서 기적이 우리와 항상 생활은  
있었기 간사 하는 있다는 생각을 하면  
육체적, 정신적 모두 상하는 스트레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 모든것이 반쯤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그러한 생산성 외하 및 신경성 부동기에 수반하여  
가동률이 떨어진다. 용이하게 떨어져 있어  
항상 생활을 불안하게 할 때가 많다.

진술인 나 여환 서명   
2001. 7. 30.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아침에 출근해보니 현장에 감시카메라가 있었다. 내 행동 하나 하나를 감시 당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고, 행동할 때마다 어깨의 힘이 들어가서 평상시보다 더 작업하기가 힘들고, 몸이 아프다. 카메라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비참한 마음과 눈물이 나고 밀할 의욕이 안난다. 지금까지 열심히 밀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켓가가 감사한 환이.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밀할 의욕이 안난다. 화가 묻적 묻적 치환이 머리 통증이 심해서 능력이 안오른다. 자꾸 불량을 낸다.

진술인 박윤식 서명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 육체적 고통: 온몸에 소름이 돋고, 주키나 키를 자주 쳐다보게 되면서 항상 긴장감으로 온몸에 식은 땀이 흐른다. 항상 항상 긴장하다보니 뒷북이 뻗뻗해지고 몸이 외근하다 소화불량이 심해졌다.  
- 정신적 고통: 항상 감시 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죄인 취급당하는 것 같은 모멸감이 든다. 집에서든 문득 주키나 키를 쳐다보면서 혼자 중얼중얼하는 버릇이 생겼다. 항상 신경이 예민해져서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대인관계에서 쉽게 화를 내고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이리다가 인간성마저 황폐해져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생을 마감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본인은 조장앞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다 보면서 일하게 되는 버릇이 갑자기 생겼다. 당연히 공구교환, 기계수리, 재질취수보정 등 세밀함과 인내력을 요하는 작업에 예전보다 작업시간이 길어졌다. 또한 작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감시 받는 것에 신경은 쓰게 되고, CCTV 설치되기에 손가락 끝끝을 입었는데 CCTV 설치후 더 큰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세심한 작업에 손이 떨리는 현상은 겪고 있다. 또한 힘들거나 다칠 우려가 크잖아. 있는 것은 회피하고 싶은

진술인 박지현 서명  
2001. 7. 27.

생각이 들어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리가 지끈거리고 이젠이 적당하다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위대한 작업을 할때 누군가가 자꾸 다그리면 하기가 싫은듯 카메라 설치 후 왠지 작업이 능률이 떨어진다.

진술인

박철수

2001.

7.

20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CC 카메라 설치 후 심한 모욕감과 권력적인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현상이 출몰 할수가 없다 가슴이 답답하고 신경이 예민해서 화를 보는 인이 많았나 있다. 나는 인간이로 살아. 기억은 다소하거나 제정신 없이 가려간적이 없는데 왜 반로 되니 앓는 이유로 CC 카메라를 설치 했는지... 그러므로 억압이 분가쪽이 아닌 이야기 할수 있다가 제발 CC 카메라는 설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진술인 박철수

서명 박철수

2001.

7.

31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30°C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파른 구덩이 하나하나씩은 목판은 이구며 대응이냐 회사에 다니는 D/C 팀 사원 송호경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러한 작업장이 CC 카메라가 설치 되었습니까  
우선 본래는 생각하니 무슨일을 하면서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됐는데도 아닌 한명 누가 감시하던 생각하니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육분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누가 날 노면에서 무슨 C 작업을, 구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렇게 할것입니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작업이 막힌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같은

진술인 송호경 서명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생산 현장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닌 인간이므로 본질인 서서하는 작업에서 작업리듬이 일정할수 없습니다  
작업장의 작업자 그중은 무리하게 과시간 감시카메라가 메달려 있습니다.  
육체적 피로도 간단히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압박이 크나큰 부담으로 억압합니다  
현장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는 순간  
(주) 대방에 사원이 < 도덕성과 신뢰성 > 무너져 내립니다.  
하루속히 현장에서 카메라가 제거 되기를 바랍니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우리 개개인이 있어서 인권침해가 분명합니다

진술인 이경안 서명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CC TV 설치후 육체적으로 식욕감퇴로 살이 빠지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모든일에 짜증이 나고있다. 그리고 항상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것같아 집안에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부부관계도 이루어 지지 못하고있다 육체적 피로와 CCTV의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서는 짜증과 피로로 잠만 잘려고 하여 집사람과의 별거 위기에 까지 와있다 이런 감시와 억압속에서 더이상의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2.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자꾸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있는것같아 죽기를 두리번거리게되고 화장실에도 자주 가게된다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CCTV 설치 이후 담배도 하루 한갑을 피우지 않았으나 한갑 반 이상 피우게 되었다 이런 감시 속에서 능률이 오르기 보다는 떨어질것이다

진술인 이영희 홍희명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절대 내역이 누가 사들여주려고 있는 생각에 자정 생활은 물론이고 부부관계에까지 누가 사들여주려고 있는 생각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현장에 감시라도 전혀 인발수 없는 정신적 안고통이 있다 인발 의욕과 기쁨이 거의 없다

진술인 이 나성서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감시 카메라 설치 후 항상 내가 왔든 안왔든 등등인듯 눈치 채는 것 같아 되게 싫다. 장벽 스톱스카 설치하여 원하는 것대로 되어 있어 싫다. 회사에 나가는 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생활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 하루. 나갔다가 하차하는 것만 있어도 기분이 안좋고. 짐승 대우를 받는 것 같다. 키를 들고가는 데에 왔을 때 나 또한 키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 안 지켜야 할 것 같아. 키를 들고다니는 것 싫다. 사람 키를 못대고 이렇듯 동물 키를 하는 사람 키. 사람 키가 아니라 해 주셨으면 바쁘다. 개인적 지경이 심했다 하겠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감시 카메라 설치 후 등등이던 작업장에서 의사상 주입으로 따지면이 일한 등등 등등이 떨어진 듯이. 제정신에 대하여 전보다 신경이 예민해졌다. 그냥 전보다도 근한 동안 사람 키가 되어간다. 카메라에 갈라지 않은 짐승 몸만 있어...

진술인 이영희 2001. 7. 22.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눈치가 먼지서 나를 감시 라인. 없다는 고통은 참으로. 말로 다 하지 못한 일이다. 이것은 인권을 침해하자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무릎하는 일이다. 카메라 설치후 복당하고 찬조하고 문면증 다쳐 견디고서 사발리고 있다. 계속 해서 그러다면 작업장에 능률도 감소 될것이다. 회사측은 하루빨리 감시용 카메라를 철수 해 주기를 바란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집중력이 없어지고. 불안. 초조 해서 일을 할수 없을 정도이다. 회사측은 일 할수 없는 남에게 감시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없다.

진술인 이세길 서명 이세길. 2001. 7. 21.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사실상 알차서 화면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봤을수도 없는 일이고 친권 운동 이라고 생각 한다. 웃으면서 일해도 힘든 현장에서 보지 않는 눈이 감시 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많이 나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후 현장 생활은 감시 미선이 사라졌고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 와 생산량의 감소가 두배 된다

진술인 이철철 서명/인  
2001. 7. 31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감시 방향만은 기본 그제외에 모든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것이다. 내 자식이 그 주위에 내 감시를 망해야 하라고 매우 불쾌하다.

은증의 CCTV이 신경을 쓰라보기 입맛을 잃어가는 문제인 것이다.

가정에서도 관련한 자증이 가정사가 인방이 되었고. 입맛 차야 안지 못할 음식이 내 자식이 아리다오 마르게 되어 나쁜 있다.

자신하고. 미리가 아리고. 아픈 있다.

작을 하고난후에 가만 보라는 핑기에 큰데 못한 찝찝함이 하루하루 아리게 살아야 되는데 많이 리를 느끼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계산을 이상이 없어도 기계를 사려야 하는 일장이이 CCTV를 보인 모든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이들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줄까 계산을 삼관없이 그런 생각이 먼저 온다.

현장을 돌아 다닐수도 질이 아리시 이고, 계산을 데리이 버릴수도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기계를 사고 버릴 수 있을 때도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모든게 카탈리

진술인 이철철 서명/인  
2001. 7. 30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많은 수를 이곳 회사에서 보내고 있는 만큼  
부엌안가미 여타에 감시를 당할때 수신이  
마음에 대한 부담과 짜증으로 인하여 생활이  
안된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회사 뿐만 아니라 집에서 까지도 걱정을 한다  
과연 어떻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다 연의 향상이 아니라 연이 악화되고 있다.

진술인 김복희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편한 마음으로 일하고 싶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우리의 일상 생활을  
일일이 감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이다.

인간답게 노여가 아닌 근무자로  
현장에 남아 일하고 싶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회사에 대한 신뢰 보다는  
반항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든다

진술인 임준화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계속적으로 누군가 감시를 한다는 생각에, 어느 순간  
괴수가 된 느낌이다.  
이렇게 감시를 받으며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자심의 비참함을 느낀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뒷 흉수가 더 많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잘못하면  
징계되기 두려워서 있다는 생각이 일기 때문에  
느리지 못함.

진술인 유 리수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감시 카메라 설치 후 누가 나를 정말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신경이 많이 예민해진 것 같다.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짜증만 내게 때문 그래서 대인관계도 불안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을 만지못하는 인상이 생겼다고 가끔도 감압해줄 때가  
없을 것 같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기 전까지만이 정년퇴직 후 육체적으로 더욱 힘들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하루에 200~300개 정도의 작업을 생산하고 있는데 겁나고 양품이 불량인거  
작업과 바가면서 생산을 하고 있고 곳곳에 위험할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기를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카메라가 설치된 후 정년퇴직 후 불안하고 감압해줄 때가  
없어서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양품과 불량 내면 시켜서 하는 생각이 불안한 마음만 더 커진다  
이러한 정년퇴직 후

진술인 유 리수 서영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일수 일주씩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 너무나 부끄럽다  
간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신경이 날카로워지 작업을 못하게 된다

진술인 유 행준 서명 행준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러지 않아서 상계위원의 때문에 내 행동에 많은 위축을 느끼  
있는데 하계위원이 갑자기 왜 검사 카메라가 설치되어  
내 행동 하나 하나를 상계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죄수가 된 기분이로 자살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다만, 상계원에 우리가 검사 카메라를 설치 하기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이런 반응을 보일지 전혀 의심스럽다.

이 회사에서 어떤 내가 상계원에서의 죄수관의 인격 존중을 받고 있는지  
정말 걱정하다.

다만, 상계원이 와서 그 영향은 어떤가? 어떤 위축을 느낄 수 있는가?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항상 많은 위축이 죄수를 다하러 오면 두려움과 자살로 회사 생활에  
영향 받는데 이제 그런게 없게 되었다.

내가 먼저 죄수는 회사에서 나의 일부를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항상 죄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상계원이 상장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가?  
진술인 유 행준 서명 유 행준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평당한 땀의 땀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 자부했다. 그러나 CCTV 설치 이후 마치 회사나 우리 직업을 죽약무도한 범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화가났다. 사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낱알이 수군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말이다. 그로 인해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자꾸 CC카메라를 인식하게 되고 노이로제에 걸린 시경이다. 작업자끼리 괴담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리고 돈대체 어떻게 시경에 낱알이 없이 이런 일을 저지러는 스 있는지 불노가 치킨어인들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같은 일은 하더라도 작업의 강도가 훨씬 크다. 이는 작업자가 일을 열심히 하지 많아서가 절대 아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일이 하기 싫고 감시 없는 곳에 가면 실은 심정 땀이다.

사면 제대로 된 품자의 제/품이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여간이다. 기계가 아니므로 이현상대로 절대 쉬시가 원하날 비를 얻을 수 없다.

진술인 장 순익 서명

2001. 7. 30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재난 위험 내기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경우가 무슨 경우인지 이해 할수가 없다. 부서가 하루 종일 나가신은 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열혈함이 리진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재현에 신경 쓴다. 가해사 신경 쓰는 후속 작업이 보장이 되겠는가.

진술인 장 영환 서명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사회적으로 몰래카메라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작업현장에서 감시카메라는 설치한후 눈치해지느  
목안개신라 (대희)  
어대 누나가 나느 몰래 지켜인 일러나는 사상을  
겪어 마치 몰래사상은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본  
것이다. 강행관행에 사느라하여 머리아프고  
괜히 나르모르게 타카난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작업능력이 현저히 감소했다. Tree등 마음을  
잡아먹고 임의로 하루 일손은 남을 (생각)까만까라는데  
이런 감시등에서 작업에 임했을때 집안과 목장을  
등이 저하했다.

진술인 김기철 서명 김기철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날씨도 무척이나 더워서 짜증나게... CC카메라 "켜" 설치되자  
자책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오랜 직장생활속에서 이런 사생활을 정말 처음 보는 일이다.  
한심하긴 기가 막힙니다.  
이러 우리 근로자들을 노예로 밖에 보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우선 생활환 ~~중~~ 인주시인의 근로자이지. 인간의 도리는 아닙니다.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 창고 열심히 일한것이 한심스럽습니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꽤 이렇게 가지 해서 일할 해야만 하는가? 회비가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나 형식적인 임하게 됩니다.

진술인 김기철 서명 김기철  
2001. 7. 30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사생활 침해가 인격권으로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언제 언제 카메라는 의식하지 못한다. \*노약자 장애인들은 물론 알 수 없는 곳을 애하프 해부 특히 현역은 위압적이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 ① 생산 능률 저하
- ② 작업자의 스트레스 과
- ③ 작업장에 대한 공포

진술인 정영환 서명  
2001. 7. 30.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퇴사에 이르러 하여 마치 내가 짐승이 된 기분이다. 근로선 이서도 주위 피해기도 사치 된 것 맞기도 모든 행동 하나 하나 감지 받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나쁜 짐승인가.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공상 카메라를 의식 한다. 언제부터 은행이 가도 CCTV 우리 모든 승인이 생겼다.

진술인 김기영 서명  
2001. 7. 30.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우선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기 직전쯤, 월급은(사생활)이 큰 변화가 있었다.

- 1) 작업중 누가가 나의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화가났으며 그기분은 하루 종일 지속되었다.
- 2)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라는 느낌이 수리선도 들었다.
- 3) 작업중 저 피로할 정도로 피로(생리적 현상) 때 자니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을 때도 수리를 두세번 가면서 감시카메라에 상황을 쓰지않을수 없었다.

4) 퇴근 후 집에 와서 항상 불안했으며 화가난 기분을 억제하지 못했다. 다음날 휴가를 치고 그기분은 계속 되었다.

무엇인가 좀 불안해졌고 행동도 민감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정말 감시카메라가 없었더라면 어느 때 까지 이런 이상태가 계속 지속될지 알 수 없었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불안한 바우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불안정 되었으며 불행할 야기할 언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몸이 경직되어서) 생리적 현상에도 기호 바로 대처하지 못해 지금은 몸이 안좋아진 것 같다 스트레스도 그것보다 더 생기는 것 같다.

진술인 김 영환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영신적 피해: 아무런 여름날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감시카메라가 등장해서 현장의 작업자들 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무려 여름날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은데 누군가 나의 모든 행동을 감시한다는 것은 이철지경이라

열전개 남라않은 머리카락이 스트레스(카메라)로 인해 더 빠진다 내머리카락 누가 책임질거야!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모든 일이 즐거운 마음상태에서 일의 능률이 생긴다고 보는데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통제 한다면 일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진술인 조 영민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정신적으로 나도 모르게 카메라에 의해 모든 행동이 촬영된다고 생각하면 모든일이 부자연스럽고 일에 몰두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카메라 설치후 작업에 몰두하기보다는 카메라 의식에 의해 나도 모르게 ~~카메라에~~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정신적으로 신경이 많이 쓰인다

진술인 최정주 서명  
2001. 7. 30.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에 있을때 누군가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니 불쾌하고 수치심과 외로움을 느끼며, 정신적 압박감이 뒷목이 뻐뻐해지고 몸이 항상 피곤하며 쉬워 감회가 온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진술인 최광식 서명  
2001. 7. 30.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취하 작업장은 뜨거운 열기속이 일하는 작업장 대형 마트나 은행에서 흔히 볼수있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우로운 현상에 무인카가 감시하고 있다는게 작업이 자장이 많으며 심리적 압박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설도 아닌곳에 설치했다는게 분노하고 치가 떨립니다. 회사는 ~~변명~~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 참으로 인간으로 대우 이런일을 할수 없겠습니까 이고통 말로 표현 못합니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일하면서 자우롭다게 일할수 ~~없다~~ 없다  
감시속이 일하면 사고 발생률이 많다

진술인 황기섭 서명 황기섭  
2001. 7. 27.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물처럼 흐르는 날씨속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선풍기 하나라도 설치 하지 못할 만정 등뒤에 CCTV가 설치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하다 보면 누가 나를 본다는 느낌이 들어 일손이 잡하지 않고 마음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만한 일이라도 화가 나고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용납 할수 없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일손이 잡하지 않아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진술인 황형택 서명   
2001. 7.



진술서

진술서

2001년 7월 22일 설치된 감시카메라(CC 카메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자세히 적어 주세요.

누군가 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 자체방으로도 가슴이 생뚱뚱하다. 사람이 걱정할 하면서 누군가 나는 들이쳐가 지켜보는데 지켜보라! 맞을 하면서 예쁜 차들도 꼭대기 나쁜수 있는 별 기계 작동자다 놀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 모든것은 들음에 받고 구둑 받는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본관을 맞출수 있는 기계보이는 못하든지는 잔뜩당수있어 안맞는다! 우리가 하는일자체가 진실로 사방에서 카메라가 우리를 감시하는 듯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 보다는 잔인할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CCTV는 철폐되어야만 한다. 심각사이 ~~이~~ 머지는 느끼는 수렁기 뿐이다.

2. 감시 카메라 설치 후 작업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자세히 적어 주세요.

자본사에서는 비용이 있으면 본관형 들게 마련이다. 한편, 본관제품서 그런 기계이므로 제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카메라는 당연히 제품을 다차이 득해버리는 것만으로도 될수 있다. 그러나 기계가 본관형을 찍어내는 기계라면 없지 않다. 하지만 기계는 본관형을 찍어낸다. 제품을 다차이 득기서 회사는 (카메라가 본관형) 작동자가 연상하 일하지 아니하고 자본사에서는 지켜보는 의도로 본관형이다. 그래서 CCTV는 철폐되어야 한다. 진술인 함. 유년 서명함 2001. 7. 30

성명: 임중환  
주민번호: ...  
부서: D/C  
직위: 조장

2000년 8월 18일 노동조합, 실업이력, 노사가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을 착하였고. 10월 2일날. 노사합의하여. 2000년 임금인상. 단체협약이 끝날때 상황이 맞는. 노동자들은. 고성이 타락되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

그런데 2000년. 10월 중순경 D/C 김창 박경현이 조합원들에게. 모든 행동을 보고서로. 매일 작성하여. 보고서. 제철을 지시하여. 그보고서들. 근거로. 김창 박경현을 제철하여. 그과장에게 노동조합은 문을 닫게 하겠다며. 이것은

회사의 방침이라고. 본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회사의 보고서를 제철을 하지 않자. 공장장 김태일이 본인에게 D/C B조. 전종채 조장은. 매일같이. 보고서를 제철하라는. 하는 왜 제철을 하지 않느냐며. 두번정도. 회사 사무실에서. 김창을 당했으며 제철하기 시작하였습다. 그러나 D/C B조. 전종채 조장보다. 보고서를 많이

제철하지 않자. 2000년. 11월경. 공장장 김태일이. 최대용 (비서장) 본인들과. 조합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모든것을. 녹음하라고. 지시하였고. 본인과. B조. 전종채 조장이. 고대로 못이 하였지만. 본인은 녹음을 하지 않았고. 전종채 조장만. 녹음을 하여. 공장장 김태일이. 자기 주위에서 공장장 김태일은. 녹음한것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듣고. 보아 무리 고지니. 거기서.

2001년 7월 30일



들어보라고 해서 1/1 림창과. 들은 적도 있습다.  
 결국 두 달이 넘는 조합원의 일일 동태 보고서와. 녹음을 중심으로. 13명의  
 조합원들이 정제 위원회에 회부되어 1차 정제 위원회에서 9명이 하고.  
 감봉이 2명. 사망자가 1명등이 결과. 있었습다.  
 노동조합에서는. 중간 관리자를 세워 현장을 감시하고. 그것으로. 정제위원회를  
 계획하여 총 13명중. 9명을 해고시킨 것은. 정제상용과 노동조합. 맞붙어라고.  
 커명하고. 위원장이 회사 주채장에 레트를 쳐. 무기한 농성이 들어가  
 노동조합. 간부들은. 매일 출근. 퇴근. 때 방문하고. 쉼회하는. 구호를. 외치며  
 현장 분위가 화제가 해드. 하루 한바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본인 또한 그상황을 보고 심리적으로. 부담과 절박한 행동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주.야간을 함께한 동료들에게 죄를 지었구나.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있을 때. 노.사가 합의하여 정제 해고. 철회되고.  
 2000년 12월 까지. 모든 사항이 종료되었습다.  
 하지만 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2000년 10월에서. 12월까지. 심적부담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고. 그 결과로. 2001년. 1월부터. 2월 20일경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다. 그후로. 녹음기는. 저에게. 오리 안았으며.  
 본인 또한. 작업에만 열중하였습다.  
 2001년 4월경.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1/1 림창. 박대리가. 본인에게  
 본인에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 2001년 10월 까지만. 참고. 견디라.  
 안산 3공장이 완공이되면 그때 거제를 모두. 이전시킬 것이다. 라고.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며. C.N.C. 기계 또한. 안산공장으로. 이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다.  
 본인은 1/1 림창 박대리에게. 공장이 완공이되면. 노.사가. 시그런게. 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자. 1/1 림창 박대리는. 작업자들도. 안산으로.  
 같이 가는데. 무슨 상관이며. 자동적으로. 사회 인원이 생길 것이며.  
 이번에는.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에게 밀리지 않게 준비를 하자고 시

원에게. 여가지를 들려주었습다  
 2001년 7월 25일 오전 09:00경. 김광현 사원이 산재사고로. 사의  
 작업이 중단 되었고. 조합원들이 무서워서 작업은 못하겠다고 하자.  
 노.사 노조 부위원장. 우석영 대표원 1/1 림창. 박정현. 대리가 여가지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때서야 박대리가 모든 거제를 OFF 하라는 지시를  
 받고. 거제를 모두 OFF 하고. 돌아와 보니 김병이 여가지를 꺼리고. 모두.  
 퇴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퇴근을 하였음. 그리고 나는. 조합으로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1/1 림창에게. 쉼회한다고. 하자. 너는 조합이니까.  
 병은 안고 하고. 돌아와서. VALCO. 8813. 저쪽에.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을 해야 된다. 너는. 일을 하라고 하였습다.  
 저는 이번 산재 사고는 큰 사고이기 때문이. 오늘은 합의할 대로. 퇴근을  
 하겠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다.  
 2001년 7월 25일 오전 09:00경. 김대리에게. 회의 하던중. 나에게. 사람들이  
 작업으로. 조금이라도. 다지면. 단체로. 작업은 거부할거야. 용서치 않겠다.  
 손해배상 및 정제 하겠다며. 본인을 심하게 질타하였습다.  
 저는. 김대리 공장장에게. 이번 사고는. 큰 사고이고. 일이 돈에 걸리지 않고.  
 림창과. 부위원장. 대리원 등 여가지를 해서. 림창이 가라고 해서. 퇴근을 한것에  
 라고 하자 공장장 김대리는. 너를 비롯한. 조합원들 모두를 정제 하겠다. 손해배상  
 청구 할 것이다. 이거 완전히 싹 없거든. 이라며. 이야기를 하였다.  
 저는 그동안. 공장장. 박정현 등이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은 상대로.  
 몰래 녹음을. 하라는. 지시에. 양심에 자책감을 느껴 차마. 그러는 못했  
 습다. 그러나. 공장장과. 박정현 등은. 노조를 깨버리고. 조합원들을  
 깨버리고. 조합원들을 정제하기 위한 조합원 일일 동태 보고를 하라고. 계속  
 질타를 하여 어쩔수없이 몰래 조합원들에게. 대해



- 62

... 과정에서. 비록 피로가 병이 생길 정도로 고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재사고. ~~사건~~ 사건은 가지고. 또 다시 조합원 들을.  
 이리로. 강제 하겠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너에 책임이 크다 리며  
 의 책임으로. 모든 문제를 뒤집어. 쓰어려 하는 것에 비록 큰 인격적  
 배신감과. 모면감으로. 참을 수가 없어. 사직서를 써서. 힘장 책상에  
 올려 놓고. 퇴근 하셨습니다.

위의 내용이 모두가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04년 7월 30일. 진술자: 임 중환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우 561-708 전주시 덕진구 인후1가 807-8 / 전화(063) 246-1501~3 / 전송(063) 246-1504 /  
 사무국장 직무대리 차 용 봉 / 단 당 방 대 련

문서번호 전북 68090 - 817

시행일자 2001. 8. 28. (년)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선 결			지 시		
	점 일 자	시간			
수 번호			결 계 공 람		
처리과					
담당자					

제목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처리 결과 통보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대용노동조합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2001조정26)에 대  
 해 시는 조정위원회에서 붙임 내용과 같이 결정 하였기에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붙임 : 결정서 정본 1부. 끝.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받는곳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대용노동조합 위원장 박성준(익산시 팔봉동 839)  
 (주)대용 대표이사 정희철(익산시 팔봉동 83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2001 조정 26

당사자 노동조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대응노동조합  
 위원장 박성준  
 익산시 팔봉동 839

사용자 주식회사 대응  
 대표이사 정희철  
 익산시 팔봉동 839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런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본건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

이 유

1.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대응노동조합(이하 "노측"이라 한다)은 2000. 8. 18.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주)대응(이하 "사측"이라 한다)과 2000. 10. 2. 단체협약(유효기간 : 2002. 1. 31)을 체결하였으나 사측에서 2001. 7. 22. 작업현장내에 CCTV

(5-1)

를 설치하자 2001. 7. 27부터 동년 8. 22까지 5차에 걸쳐 사측에 CCTV철거와 공장이전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동년 8. 17. 우리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2. 노측은 작업장내 CCTV설치로 근로조건이 심대하게 저하되었고 공장이전설 등으로 고용불안이 야기되므로 단체협약 제3조(근로조건 저하)와 제118조(보충협약 및 제교섭)에 근거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하자며 2001. 7. 27부터 동년 8. 22까지 5차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였던 반면, 사측은 공장이전설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수출물량을 2006년분까지 확보하여 생산설비를 증설해야 할 형편이고 CCTV설치도 근로자 감시가 아닌 도난방지과 작업기계보호에 있고 단체협약이 2002. 1. 31. 까지 유효하므로 이를 지킬 평화의무가 노사당사자에게 있어 노측의 보충협약 교섭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보충협약 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이에 우리위원회는 본 건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단체협약의 평화의무를 준수하자는 사측의 주장과 근로조건 저하와 고용불안을 이유로 보충협약을 체결하자는 노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더 이

(5-2)



상 조정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다만 노사간 이견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자율적인  
대화로서 해결하도록 권고한다.

따라서 본 조정신청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김의영

조정위원 유장희

조정위원 이중길

2001. 8. 27.



<첨부자료 5>

## ILO '노동자권리규약' 일부

-서울경제신문 96/10/08일자 중.

국제노동기구(ILO)는 7일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마련했다. 제네바의 ILO 본부에서 세계 20여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제지침이다. 이 규약은 ILO산하 1백74개 회원국들에 구속력 없는 권장 입법 지침으로 하달된다.

관계자들은 이 규약이 "피고용인의 신상 정보 수집에 관한 고용주의 필요성과 개인 정보 유통을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평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정치 성향에 관한 사항들을 국가기관에 넘기거나 노동자의 전화 통화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또 합리적인 선에서 작업장내 노동자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카드나 배지를 강제로 착용 시켜 작업장내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 감시하는 행위도 위반이다. 이 규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
- △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이나 정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려 해서는 안된다.
- △ 노동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 △ 노동자에 대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비밀 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된다.
- △ 의료상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개인 정보는 다른 인사 정보와 분리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

(5-3)

<첨부자료 6>

##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에 대한 헌법 조항 및 노동자 감시 관련 대법원 판례

###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해당판례

①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大判 1998.9.4 96다11327)

②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大判 1998. 7. 24 96다42789)



<첨부자료 7>

## 향조 (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인권은 공장의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작업장에 있는 동안에는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 뿐 아니라 생각까지 회사의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인권이 박탈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편리를 가져온 현대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는 철저한 자본의 도구가 되어 최후의 일초까지 노동을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특히 최근의 첨단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를 전천후로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경향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 감시의 대표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최근 (주)대용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익산 2공단에 소재한 (주)대용에서는 지난 7월 22일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하룻밤 새 작업장에 CCTV들을 설치하였다.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던 대용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해 왔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부당 해고 및 징계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25일에만 해도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700℃에 달하는 알루미늄 주물을 뒤집어쓰고 심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산업재해에도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오히려 디지털녹음기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해왔다. 이에 대용 노동자들은 노동 감시 중단과 CCTV 철거를 주장하며 지난 8월 28일 파업에 돌입하였다.

첨단 기술로 인한 노동자 감시에서 전형적인 모습 중 한 가지는, 감시가 결코 노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가 작업장에 CCTV를 도입할 때에는 언제나 절도 예방, 시설 보호, 생산성 향상, 고객서비스 증진, 객관적 기록, 심지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시 기술이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감시를 당하는 당사자인 노동자들과의 합의 없이는 작업장에 도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대용 역시 이 CCTV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간 단 한차례의 도난과 파손행위가 없었던 상황인데다가 도난당할 성질의 물품도 없는 상황에서 도입된 이 CCTV는 사측의 도입 명분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는 노동자 감시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우리는 동의한다.

최근 CCTV 뿐 아니라 ICCARD, 생체인식 기술, 액티브 배지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노동자 감시에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자 감시는 극도의 노동 탄압이며 노동자의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마땅한 사회적 토론과 대응 마련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들을 감시로부터 보호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즉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주)대용의 노동자 감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모든 CCTV는 철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시도 역시 일체 중단되어야 한다.

(주)대용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우리는 CCTV가 철거될 때까지 이들의 투쟁에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 (주)대용은 모든 CCTV를 즉각 철거하고 노동감시행위 일체를 중단하라!
- (주)대용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라!
- (주)대용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1년 9월 3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부산정보연대PIN, 서울대 이공대신문사,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전화.741-5363. 전송.741-5364.

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사회연대/ 기지촌여성아이들의쉼터 '새움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대자보/ 문화계  
혁신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의료연합/ 부산인권센터/ 사회정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성공회대인  
권평화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의꿈너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군복역희생자가족협회/ 전국목회자들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인권지기/ 인권과교육개혁을위한전국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평등노조이주지부/  
평화인권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작업장 감시에 맞선 (주) 대용노조의 전면 파업을 지지하는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 (주)대용은 CCTV를 전면 철거하고 노동자 감시를 중단하라!

녹음기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말을 몰래 채록하고, CCTV를 설치해 작업장을 감시하는 사측의 비인간적인 노동 통제에 항의해 (주)대용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주)대용은 지난 해 10월 단체협상 체결 후부터 몇몇 노동자를 압박해 소형 디지털 녹음기로 조합원들의 말을 몰래 녹음하여 보고하도록 한 뒤 이 녹음 기록을 근거로 지난 12월, 13명의 노조원들을 해고 또는 징계 조치했다. 노동자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향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지 않았던 한 조장은 지난 7월 30일 사측의 계속되는 압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공장을 떠났다.

녹음기를 이용한 상호 감시체계에 만족하지 못했던지 지난 7월 22일에는 아예 CCTV 7대를 작업장 곳곳에 알방적으로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노조가 CCTV의 용

도에 대해 수차례 공식질의를 했으나, 회사측은 뒤늦게 ‘시설보호, 파손위험 방지’를 위 해서라며 발뺌하고 있다.

이에 대용노조는 CCTV의 즉각 철거를 주장하며 보충협약을 회사측에 6차례나 요구 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묵살하고, “CCTV철거는 있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는 **익산노동사무소가 내린 CCTV철거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CCTV가 설치된 지 두 달여, 노동자들은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어느 노동자는 작업하는 중 항상 CCTV쪽을 바라보다 **긴장성 두통과 근육통에 걸렸다고도 하며, 어느 여성노동자들은 ‘알몸을 보이는 것 같은 수치심’과 나아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나’라는 굴욕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남성노동자는 CCTV로 인한 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찾아간 병원에서 **‘망상적 급성 정신병적 장애로 추정 된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작업장 감시에 관한 ILO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지부터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반드시 공개적으로 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대용의 행위는 이러한 상식적인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열한 노조 파괴 음모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는 (주)대용노조 파업에 공감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주)대용 이 전근대적인 작업장 감시 정책을 중단하고 나아가 노조 파괴 책동을 그만 두기를 엄 속하게 권고한다.

- (주)대용은 노동자 감시하는 CCTV를 즉각 철거하라!
- (주)대용은 불법적 징계와 해고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 (주)대용은 CCTV로 인한 인권유린에 사과하고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에 응하라!
- 당국은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1. 9. 4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송원찬)



# 주식회사 대용

첨부자료 9

570-300 전북 익산시 팔봉동 839번지 TEL : 835-9541~9 FAX : 835-9540

문서번호 : 총무X-01-0806-01

수신 : (주) 대용노동조합 위원장

제목 : 노사협의회 실시 일정 통보 및 문서번호 01-08-06-01에 대한 답변

1. 일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 문서번호 01-08-06-0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 합니다.

- 아 래 -

가. 폐쇄회로에 관련한 부분은 시설보호 등에 관한 사항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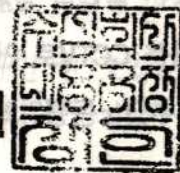
나. 공장이전 문제는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다. 기타 관련사항은 보충협약이 아니라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할 수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일정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①. 2001년 8월 7일 : 협의회 안건 상호 제시

②. 2001년 8월 10일 15시 : 노사협의회 실시 - 끝 -

주식회사 대용  
공장장 김태일



첨부자료 10.

[ 보도 자료 ]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주)대용을 지키기 위한 비조합원 일동

내용 : 비조합원, 사무직 사원 생명권 및 탄압 규탄대회

## "CCTV철거 반대 및 생명권 보장을 위한 비조합원, 사무직 사원 규탄대회 추진...."

대용노동조합의 노동자감시,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한 집단행동과 함께 시작된 대용노동조합의 탄압과 위협, 협박 등으로부터 생명권을 보장 받기위한 CCTV철거 결사반대를 외치며 휴가, 휴일을 반납한채 일터를 지키던 비조합원 및 사무직 사원들이 규탄 대회를 갖기로 결의했으며 이와 함께 그 동안 노동조합 및 민주노총의 탄압 행위 성명서를 9월 7일 익산노동사무소 앞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대용노동조합이 산하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무조건 노동자 감시,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며 대용의 비조합원 및 사무직 사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항의하는 바이다.

우리 비조합원과 사무직 사원은 이념과 신념이 다르다고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비조합원과 사무직 사원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대용노동조합에 합법적으로 대응하여 갈 것이며 만약 민주노총이 여기에 뛰어들어 우리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면 민주노총 규탄대회도 서슴치 않을 계획이다.

우리는 나의 가족,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8월 28일 노동조합은 파업을 선언하였고 비조합원과 사무직 사원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XX, 병X XX 등의 욕설은 기본이고 현장



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 "너희들 우리들 복귀하면 죽을 줄 알아"라는 등의 협박과 위협은 물론이며 인터넷에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 노동자를 기계로 취급했던 사측의 책임관리자들과 인간임을 거부하고 사측에 빌붙어 주구노릇을 했던 부류들을 깨끗이 청소할 것입니다."라는 협박을 공공연히 게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깨끗이 청소할 것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먹고 살고자 직장을 찾아 (주)대용에 왔으며 내 직장, 내 일터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사회단체도 직접 찾아와 CCTV도 보지 않았으며 회사의 실정을 묻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본 것처럼 인권탄압이며 노동자 감시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시각으로 무조건 CCTV를 설치했으니 악덕기업이고 악덕사업주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들 비조합원과 사무직 사원들은 사장님을 존경하고 (주)대용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장님을 악덕 사업주라고 떠드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사장님을 아느냐고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했으며 CCTV철거를 결사반대하며 회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 1. 대용노동조합의 폭력성을 고발합니다.

우리들이 입고 있는 T셔츠의 앞면을 보면 각목에 이름을 새기고 쇠꼬챙이로 찍은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2000년 12월 대표이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작업장의 기계를 임의로 정지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조장이었던 이들이 징계위원회에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의 이름에 쇠꼬챙이를 찍어대는 저주행위이며 주술 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고는 너무하다라고 하시며 사장님은 이들을 용서하고 받아 들였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5일 조장에게 쇠파이프와 핸드 그라인더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욕설을 하고 조장의 지시이든 회사의 지시이든 무조건 조합과 협의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거부하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더욱이나 10여년 차이가 나는 나이 어린 조합원이 나이 많은 비조합원에게 "너 이 XX야"라는 등으로 온갖 협박을 가하여 결국 조합에 가입하는 사태까지도 있었습니다. 다 같은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

기에 묵묵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 먹고 살겠다고 있는 자신이 미워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린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6일 부당한 집단행동(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우리들이 작업을 하던 중 조합원들이 난입하여 공장장님에게 조차도 "야 니미 시XX야, 재보같은 새끼야 너 이리와봐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가 하면 작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욕설과 협박을 하는 있을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들이 정당한 노동자이며 정당한 노동조합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무엇이며 민주노총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먹고살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큰 죄입니까?

### 2. 비조합원 및 사무직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CCTV철거 결사 반대

CCTV설치와 관련하여 인권탄압이며 노동자 감시라고 외치는 인권단체들은 한번도 회사에 와서 모니터를 본적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CCTV가 설치될 당시 우리들은 설치가 되었나 보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CCTV가 인권탄압이다, 인권감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신문이며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공장이전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며 우리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공장을 이전한다는 회사가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조합원으로 있을 당시 CCTV가 인권탄압이니 무조건 설문지에 기록을 하라고 했으며 거부하자 개인적으로 불러서 기록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자 또다시 집단 따돌림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노동조합의 진정한 모습을 상상하며 탈퇴를 결심하였습니다. 현재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CCTV에 아무런 감정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들은 CCTV가 우리 각자를 조합원들의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지켜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회사에 CCTV철거 결사 반대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도장을 파서 CCTV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대용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대하여 실망감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도대체 노동조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조합원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집단 따돌림과 저주를 하고 쇠파이프와



핸드 그라인더를 휘두르는 것이 노동조합입니까? 또한 회사의 총책임자인 공장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입니까? 이제는 단연코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무직이란 이유로 온갖 욕설과 탄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권은 우리의 손으로 지킬 것이며 힘과 폭력에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CCTV가 왜 유독 노동조합원에게만 인권탄압이며 노동자 감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인권탄압이며 노동자 감시인 CCTV가 이제는 우리의 생명줄이 되어 버렸습니다. CCTV가 설치된 이후로 오히려 집단 따돌림을 하는 것도 기계고장도 줄어들었으며 폭언과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CCTV가 없는 장소에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CCTV가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인권침해가 아니며 노동감시가 아니라 인권을 보호해주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CCTV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용노동조합의 행태가 진정한 노동조합이라면 우리는 노동조합을 거부할 것이며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 3.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의 생명권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이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집단이라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의 생명을 끊으려 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온갖 인권단체들도 우리가 우리의 일터인 직장을 지키려 하는데 대용노동조합의 말만을 듣고 (주)대용을 탄압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구사대이기를 자청합니다. 아니 우리의 생명권을 사수하기 위해 회사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일터요 삶의 터전인 (주)대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들을 계속 탄압하고 억압한다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당신들과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총도 각종 사회단체보다 아니 노동조합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망친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삶의 터전이요, 일터를 망가뜨리려 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용노동조합의 주장만을 듣지 말고 제발 비조합원과 사무직들의 애절한 호소도 들어 주십시오.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제 형, 언니, 동생하던 조합원들이 모른척하고 "XX새끼, 밤길 조심해라, 복귀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위협을 하는 이들이 진정한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운동이며 노동조합의 모습은 아니리라 판단됩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듯 CCTV가 감시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한쪽은 생명이 달린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고 제발 우리의 생명권을 위협하지 말아 주십시오. CCTV가 정말 인권탄압인지 아니면 비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욕설을 하고 집단 따돌림을 하는 노동조합의 행태가 인권탄압인지 분명히 판단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를 탄압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위를 한다며 작업장에 들어오면서 조직부장이란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기타 조합원들은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는 이들이 진정 민주노총노동조합의 모습은 아니리라 생각되며 오히려 우리들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4. 결어

우리 비조합원 및 사무직 직원들은 수출 물량의 폭주 속에서 생산을 앞세워 파업으로 무너지는 (주)대용을 지킬 것입니다. (주)대용의 사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껌 하나 조차도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혼자만 빼고 주던 그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수치로 눈물이 두볼을 타고 내리던 그 때를 견디며 지키던 우리의 생명의 터전을 망치려 하는 대용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지킬 것입니다. 텅빈 방 한구석에 앉아 우리 가족의 미래와 생계를 생각하다보니 너무나 답답하고 슬픔이 밀려와 눈물이 흐르지만 나의 가족과 생계를 위해서 (주)대용의 생명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협박과 폭력이 다가올지라도 회사를 지킬 것이며 대용노동조합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진정한 노동자로 돌아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떠나 가족처럼, 친구처럼 다함께 (주)대용이라는 어린 묘목을 거목으로 가꾸어 가기를 두손 모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CCTV철거 결사 반대 ---- 비조합원 생명줄 CCTV절대 사수 ----

2001년 9월 7일 (주)대용 비조합원, 사무직 일동





## 주식회사 대용

570-300 전북 익산시 팔봉동 839번지 TEL : 835-9541~9 FAX : 835-9540

문서번호 : 총무X - 01 - 0828 - 01

수신 : (주) 대용노동조합 위원장

제목 : 파업 통보에 관한 건

1. 일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 문서번호 01-08-27-1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아 래 -

가. 현재(8월 28일) (주)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고있는 부당한 노동쟁의임을 알립니다.

나. 부당한 노동쟁의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사내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막을 철거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현장 작업장내에서 무단으로 출입하여 근로하고 있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 야유를 보내며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동위원회의 결정여부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니 즉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겠습니다.

바. 부당한 노동쟁의로 인한 식사량의 폭주와 (주)대용의 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식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식당을 폐쇄합니다. -끝-

주식회사 대용  
대표이사 정희철



저희는 주)대용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기계문제시 문체부장인 박태수 사원에게 조장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이제까지 박태수 사원은 묵묵히 회사일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박태수 사원을 해고 한 것은 너무도 크게 사측에서 해석한 것 같습니다.이점 사측 징계위원들이 감안하여 주십시오.

부서	성명	서명
D/C	김민선	
"	박철수	
"	정영만	
"	박정복	
"	정영식	
"	유재수	
"	노영환	